

選舉管理委員會法中改正法律案

議案	
番號	

提案年月日：1992. 11. .

提案者：政治關係法審議特別
委員 長

1. 提案経緯

- 가. 第158回國會(臨時會) 第5次 本會議(1992. 8.12)의 議決로 構成된 政治關係法審議特別委員會가 選舉管理委員會法改正에 關하여 7個의 合意事項과 4個의 未合意事項의 審議結果를 第159回國會(定期會) 第1次 本會議(1992. 9.14)에서 報告한 바 있음.
- 나. 第159回國會(定期會) 第2次 本會議(1992.10. 2)의 議決로 再構成된 政治關係法審議特別委員會 第2次 會議(1992.10.12)에서 法案審議班을 構成하고 選舉管理委員會法의 改正審議를 委任함.
- 다. 1992年10月31日 政治關係法審議特別委員會 第3次 會議에서 法案審議班으로부터 大統領選舉法에 對한 審議結果를 報告받고 同審議班에서 成案한 選舉管理委員會法中改正法律案을 審議한 바 이를 委員會案으로 採擇하기로 議決함.

2. 提案理由

各種 選舉時 選舉法違反行爲 등에 대한 監視·團束權을 부여하여 選舉管理委員會의 權限을 強化하고, 中央選舉管理委員會 事務總長의 職級을 國務委員級으로 格上하는 등 事務機構의 補強과 選舉研修院設置 및 所屬公務員의 獨自的인 採用 등으로 專門性을 提高시킴으로써 選舉事務의 效率的인 管理를 도모하려는 것임.

3. 主要骨子

가. 中央選舉管理委員會 및 市·道選舉管理委員會에 委員長을 補佐하기 위하여 各 1人의 常任委員이 委員長의 命을 받아 事務處 또는 事務局의 事務를 監督할 수 있도록 그 職務範圍를 擴大함(案 第6條 第1項).

나. 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이 職務遂行중에 選舉法違反行爲를 발견한 때에는 中止·警告·是正命令을 하도록 하고, 그 違反行爲가 選舉의 公正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中止·警告·是正命令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搜查依頼 또는 告發할 수 있도록 함(案 第14條의 2).

다. 中央選舉管理委員會 事務總長 및 事務次長의 職級을 各 國務委員

및 次官級으로 上向調整하고, 選舉局과 公報官을 選舉管理室로 統合하여 選舉管理室長(1級)밑에 課와 2級 또는 3級인 選舉管理官 및 弘報管理官 각 1人을 두도록 하며,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의 事務課를 事務局 또는 事務課로 變更하여 局長은 4級, 課長은 4級 또는 5級으로 調整하는 등 選舉管理委員會의 事務機構를 補強함(案 第15條第4項·第6項 내지 第8項 및 第10項).

라. 選舉·政黨事務에 관한 公務員의 教育과 選舉·政黨關係者에 대한 研修를 위하여 事務處에 選舉研修院을 設置할 수 있는 根據를 마련함(案 第15條의 2).

마. 選舉管理委員會 소속 公務員은 選舉管理委員會가 獨自적으로 採用·充員하도록 하되, 試驗의 일부 또는 전부를 總務處長官에게 委託할 수 있도록 함(案 第15條의 3).

바. 各級選舉管理委員會가 選舉事務등에 관하여 關係行政機關에만 필요한 指示 및 事務協助를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을 公共團體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되, 事務協助要請에 있어 人員·裝備 등이 필요한 경우 關係行政機關에 대하여는 指示 또는 協助要求를, 公共團體에 대하여는 協助要求를 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協助機能을 強化함(案 第16條).

- 사. 中央選舉管理委員會가 選舉·國民投票 및 政黨關係法律에 대한 制定·改正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國會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同 法律에 대한 法執行機關의 의견반영 기회를 明文化함(案 第17條第2項).
- 아. 選舉法違反行爲에 대한 指導·圓束業務 등 選舉事務의 效率的 遂行을 위하여 各種 選舉 및 國民投票期間(準備期間 포함)중 選舉管理委員會 소속公務員과 派遣·委囑公務員에게 特別精勵金を 支給할 수 있도록 함(案 第19條의 2).

法律 第 號

選舉管理委員會法中改正法律案

選舉管理委員會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중 "委員長을 補佐하기 위하여"를 "委員長을 補佐하고 그 命을 받아 소속 事務處 또는 事務局의 事務를 監督하게 하기 위하여"로 한다.

第11條第3項중 "事務課長 또는 委囑幹事"를 "事務局長·事務課長 또는 委囑幹事"로 한다.

第14條의 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4條의 2(選舉法違反行爲에 대한 中止·警告등) 各級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은 職務遂行중에 選舉法違反行爲를 발견한 때에는 中止·警告 또는 是正命令을 하여야 하며, 그 違反行爲가 選舉의 公正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中止·警告 또는 是正命令을 不履行하는 때에는 管轄搜查機關에 搜查依頼 또는 告發할 수 있다.

第15條第4項중 "次官과"를 "國務委員의 報酬와"로 하고, 同條第6項중 "1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를 "政務職으로 하고 報酬는 次官의

報酬와 同額으로 한다."로 하며, 同條第7項중 "公報官·企劃管理官·選舉局 및 政黨局을 두고 企劃管理官 밑에 擔當官을, 각 局에 課를 두되"를 "選舉管理室·企劃管理官 및 政黨局을 두고 選舉管理室에 課와 選舉管理官 및 弘報管理官 각 1人을, 企劃管理官 밑에 擔當官을, 局에 課를 두되"로 하고, 同條第8項중 "公報官·企劃管理官 및 局長"을 "選舉管理室長은 1級, 企劃管理官·局長·選舉管理官 및 弘報管理官"으로 하며, 同條第10項중 "事務課를 두며, 課長은 4級 또는 5級"을 "事務局 또는 事務課를 두며 局長은 4級, 課長은 4級 또는 5級"으로 하고, 同條第16項중 "事務課長"을 "事務局長 또는 事務課長"으로 한다.

第15條의 2 및 第15條의 3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5條의 2(選舉研修院) ①選舉·政黨事務에 관한 公務員의 教育과 選舉

·政黨關係者에 대한 研修를 위하여 事務處에 選舉研修院을 들 수 있다.

②選舉研究院에 院長 1人을 두며, 2級 또는 3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③選舉研修院의 組織과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15條의 3(公務員의 採用등) ①選舉管理委員會 소속公務員의 任用을 위한 採用試驗·昇進試驗·기타 試驗은 國家公務員法을 적용하여 事務總長이 실시하되, 試驗의 일부 또는 전부를 總務處長官에게 委託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同法 第34條·第40條의 2第5項 및 第42條 第2項의 "總務處長官"은 각각 "中央選舉管理委員會事務總長"으로 본다.

②國會·法院 및 行政府 소속公務員을 轉入任用하고자 할 때에는 試驗을 거쳐 任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職級에 대한 任用資格要件 또는 昇進所要最低年數·試驗科目이 동일할 때에는 그 試驗의 일부 또는 전부를 免除할 수 있다.

第16條의 題目 "(事務指示등)"을 "(選舉事務등에 대한 指示·協助要求)"로 하고, 同條第2項 및 第3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各級選舉管理委員會는 選舉事務를 위하여 人員·裝備의 지원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行政機關에 대하여는 指示 또는 協助要求를, 公共團體 및 銀行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金融機關(開票事務從事員을 委囑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協助要求를 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示를 받거나 協助要求를 받은 行政機關·公共團體등은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17條중 "選舉(委託選舉를 포함한다)"를 "選舉(委託選舉를 포함한다. 이하의條에서 같다)"로 하고, 同條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選舉, 國民投票 및 政黨關係法律의 制定·改正 등 必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國會에 그 의견을 書面으로 제출할 수 있다.

第19條第1項第2號중 "실시에"를 "準備 및 실시에"로 한다.

第19條의 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9條의 2(特別精勵金 支給) ①각종 選舉 및 國民投票期間(準備期間을 포함한다)중 選舉管理委員會 소속公務員 및 派遣·委囑公務員에 대하여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特別精勵金を 支給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支給하는 特別精勵金은 國家가 실시하는 選舉 및 國民投票의 경우에는 國家가, 地方自治團體의 選舉의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가 각각 이를 부담하되, 그 地方自治團體의 區域을 管轄하는 選舉管理委員會의 上級選舉管理委員會 소속 公務員등에 支給하는 特別精勵金은 國家가 부담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精勵金은 選舉實施可能期間의 開始日전 3月부터 選舉日후 1月の 範圍내에서 支給하되, 選舉類型別

支給對象·支給期間 및 支給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附 則

-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②(經遇措置) 이 法 施行당시 事務機構의 事務와 당해 事務를 分掌하던 機構 및 定員은 이 改正法律에 의한 規則이 制定·施行될 때까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공백

新·舊條文對比表

現 行	改 正 案
<p>第6條(常任委員) ①中央選舉管理委員會와 市·道選舉管理委員會에 委員長을 補佐하기 위하여 각 1人의 常任委員을 둔다.</p> <p>②~③ (생략)</p>	<p>第6條(常任委員) ①----- -----委員長을 補佐하고 그 命을 받아 소속 事務處 또는 事務局의 事務를 監督하게 하기 위하여----- ②~③ (現行과 같음)</p>
<p>第11條(會議召集)</p> <p>①~②(생략)</p> <p>③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와 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長과 副委員長이 모두 關位 또는 事故가 있을 경우 委員長·副委員長 또는 臨時委員長을 互選하기 위한 會議召集은 事務課長 또는 委囑幹事가 이를 代 行한다.</p>	<p>第11條(會議召集)</p> <p>①~② (現行과 같음)</p> <p>③----- ----- ----- ----- ----- 事務局長·事務課長 또는 委囑幹事 -----</p>
<p>(新 設)</p>	<p>第14條의 2(選舉法違反行爲에 대한 中止·警告등) 各級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은 職務遂行중에 選舉法違反行爲를 발견한 때에는 中止·警告 또는 是正命令을 하여야 하며,</p>

그 違反行爲가 選舉의 公正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中止·警告 또는 是正命令을 不履行하는 때에는 管轄搜查機關에 搜查依頼 또는 告發할 수 있다.

第15條(事務機構등)

①~③ (생략)

④事務總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報酬는 次官과 同額으로 한다.

⑤ (생략)

⑥事務次長은 1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⑦事務處에 公報官·企劃管理官·選舉局 및 政黨局을 두고 企劃管理官 밑에 擔當官을, 각 局에 課를 두되 事務總長·事務次長·局長을 직접 補佐하기 위하여 그 밑에 擔當官을 들 수 있으며 局에 속하지 아니하는 課 1個를 들 수 있다.

⑧公報官·企劃管理官 및 局長은 2級 또는 3級, 課長은 4級, 擔當官은 3級 또는 4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다만, 擔當官중 1人은 3級상당 또는 4級상당인 別定職 國

第15條(事務機構등)

①~③ (現行과 같음)

④-----
---- 國務委員의 報酬와 -----

⑤ (現行과 같음)

⑥-----政務職으로 하고 報酬는 次官의 報酬와 同額으로 한다.

⑦----- 選舉管理室·企劃管理官 및 政黨局을 두고 選舉管理室에 課와 選舉管理官 및 弘報管理官 각 1人을, 企劃管理官 밑에 擔當官을, 局에 課를 두되-----

⑧選舉管理室長은 1級, 企劃管理官·局長·選舉管理官 및 弘報管理官

家公務員으로 補할 수 있다.

⑨(생략)

⑩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에 事務課를 두며, 課長은 4級 또는 5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⑪~⑮(생략)

⑯ 第9項의 事務局長 및 第10項의 事務課長과 第15項의 委囑幹事는 당해 委員長의 命을 받아 所管事務를 掌理하고 所屬職員을 指揮·監督한다.

(新設)

(新設)

⑨(現行과 같음)

⑩-----事務局 또는 事務課를 두며 局長은 4級, 課長은 4級 또는 5級-----

⑪~⑮(現行과 같음)

⑯-----事務局長 또는 事務課長-----

第15條의 2(選舉研修院) ①選舉·政黨事務에 관한 公務員의 教育과 選舉·政黨關係者에 대한 研修를 위하여 事務處에 選舉研修院을 둘 수 있다.

②選舉研修院에 院長 1人을 두며, 2級 또는 3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③選舉研修院의 組織과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15條의 3(公務員의 採用등) ①選舉管理委員會 소속公務員의 任用을 위

한 採用試驗·昇進試驗·기타 試驗
은 國家公務員法을 적용하여 事務總
長이 실시하되, 試驗의 일부 또는
전부를 總務處長官에게 委託하여 실
시할 수 있다. 이 경우 同法 第34條
·第40條의 2第5項 및 第42條第2項
의 "總務處長官"은 각각 "中央選舉
管理委員會事務總長"으로 본다.

② 國會·法院 및 行政府 소속 公務員
을 轉入任用하고자 할 때에는 試驗
을 거쳐 任用하여야 한다. 다만, 해
당 職級에 대한 任用資格要件 또는
昇進所要最低年數·試驗科目이 동일
할 때에는 그 試驗의 일부 또는 전
부를 免除할 수 있다.

第16條(事務指示등)

①(생략)

② 各級選舉管理委員會는 職務遂行상
의 필요에 따라 관계 行政機關에 事
務協助를 요청할 수 있다.

第16條(選舉事務등에 대한 指示·協
助要求)

①(現行과 같음)

② 各級選舉管理委員會는 選舉事務를
위하여 人員·裝備의 지원등이 필요
한 경우에는 行政機關에 대하여는
指示 또는 協助要求를, 公共團體 및
銀行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金融機
關(開票事務從事員을 委囑하는 경우
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協助要求를

③第1項의 指示나 第2項의 事務協助의 요청을 받은 당해 行政機關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17條(法令에 관한 의견표시등) 行政機關이 選舉(委託選舉를 포함한다)·國民投票 및 政黨關係法令을 制定·改正 또는 廢止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法令案을 中央選舉管理委員會에 송부하여 그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新 設)

第19條(經費의 부담) ①國家가 실시하는 選舉·國民投票 및 政黨에 관한 事務에 요하는 다음 各號의 經費와 地方自治團體의 選舉에 관한 事務중 統一的인 수행을 위하여 中央選舉管理委員會 및 市·道選舉管理委員會가 행하는 指示와 資料·裝備등의 제공에 소요되는 經費는 國家가 부

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示를 받거나 協助要求를 받은 行政機關·公共團體등은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17條(法令에 관한 의견표시등) ①-----
-----選舉(委託選舉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②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選舉·國民投票 및 政黨關係法律의 制定·改正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國會에 그 의견을 書面으로 제출할 수 있다.

第19條(經費의 부담) ①-----

담하고 그 事務의 수행에 지장이 없
도록 中央選舉管理委員會에 支出하
여야 한다.

1. (생략)

2. 選舉 및 國民投票의 실시에 필요
한 經費

3.~7. (생략)

②~③ (생략)

(新設)

1. (現行과 같음)

2. -----準備 및 실시에

3.~7. (現行과 같음)

②~③ (現行과 같음)

第19條의 2(特別精勵金 支給) ①각종

選舉 및 國民投票期間(準備期間을
포함한다)중 選舉管理委員會 소속公
務員 및 派遣·委囑公務員에 대하여
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特別精勵金を
支給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支給하는
特別精勵金은 國家가 실시하는 選舉
및 國民投票의 경우에는 國家가, 地
方自治團體의 選舉의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가 각각 이를 부담하되
그 地方自治團體의 區域을 管轄하는
選舉管理委員會의 上級選舉管理委員
會 소속 公務員등에 支給하는 特別
精勵金은 國家가 부담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特
別精勵金은 選舉實施可能期間의 開

始日전 3月부터 選舉日후 1月の 範圍 내에서 支給하되, 選舉類型別 支給對象·支給期間 및 支給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 規則으로 정한다.

공백